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88
----------	------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05월 28일 김경우 의원 외 15명
2. 회부일자 : 2021년 05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02월 1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우 의원)

1. 제안이유

- 기존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에서 배제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초·중·고등학교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금연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Ⅲ. 검토보고의 요지

1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초·중·고등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금연구역 지정현황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제9조제4항에서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주로 실내에서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대한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21년 12월 기준 약 1,954개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표>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21.12.31. 기준)

연번	구분	개소수	지정일(최초)	단속주체	지정근거
1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3	’11.3.	서울시 (자치구로 위임 - 사무위임조례개정중)	9호
2	버스정류소 (중앙차로)	389	’11.12.		5호
3	도시공원	24	’11.9.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등 위임)	1호
4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1,538	’16.5.	관할 자치구	6호
합계		1,954			

- 참고로 법에 따른 금연구역은 277,885개소, 시·자치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17,076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별첨자료 참고]
- 한편,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법 개정을 통해(2011.6.7. 개정, 2011.12.8. 시행)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 바 있으며,²⁾ 또한 법 개정(2017.12.30. 개정)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음.³⁾

2) 개정 이전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사무실, 회의장, 복도, 화장실 등)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금년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2012.12.4.)

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⑥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

나. 조례개정안의 필요성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초·중등교육법」⁴⁾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제도개선안 주문·의결을 통해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9조를 개정해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및 초·중·고등학교 경계 밖 30미터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또한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에 무방비하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었으며,⁵⁾ 서울시에서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⁶⁾을 통해 청소년 주도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연계하여 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된 구역에 금연거리 바닥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21년

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5) “교내에서만 금연...초중고 주변은 간접흡연에 무방비.”, KBS 뉴스, 2019년 6월 7일 수정, .2022년 2월 4일 접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16416>

6) ‘2021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건강증진과-6132. (2021.3.18.)

기준 381개소가 학교통학로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22년 431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이내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다. 기타 사항

- '21년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각각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하고 단속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며, 자치구에서 금연구역 지정·단속업무가 정착되었다는 점, 단속예산 감액에 따른 시 금연구역 단속반 감축 등을 근거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⁷⁾을 통해 자치구로의 사무위임을 추진하고 있음.
 - '21년 12월 기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은 총 1,954개소로 이 가운데 도시공원 24개소는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1,538개소는 관할 자치구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⁸⁾
 - 부서 사무위임계획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사무위임대상은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1,954개소 중 이미 사업소, 자치구

7) 2022년 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78).

8) 보고서 4p. <표> 참조

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금연구역을 제외한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총 393개소의 단속사무로 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치구의 조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
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 반경 10m이내까지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초·중·고등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음.
-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포괄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포함해 학교 부근의 금연구역을 확대하려는 법안⁹⁾들이 계류 중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그 개정사항이 조례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9) 김민기의원 안(의안번호 379, 2020.6.11.발의), 노웅래의원 안(의안번호 677, 2020.6.18. 발의), 소병훈의원 안(의안번호 4085, 2020.9.21. 발의), 강기운의원 안(의안번호 6010, 2020.12.1.발의), 유기홍 의원안(의안번호 7670, 2021.1.27 발의), 최중윤 의원안(의안번호 8420, 2021.2.26. 발의), 천준호의원 안(의안번호 11623, 2021.7.21. 발의)

별첨 서울시·자치구 금연구역 현황

☐ 총 금연구역 288,961개소

〈'21. 12. 31.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청사	1,394	어린이 놀이시설	8,242	관광숙박업소	438	공동주택	365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2,182	학원	14,326	체육시설 (대형, 실내)	11,109	음식점	164,723
대학교	74	교통관련시설	1,655	사회복지시설	4,524	흡연카페 (식품자판기영업소)	436
의료기관, 보건소 등	18,062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2,788	목욕장	835	유치원 10m	827
어린이집	5,311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등	23,706	게임제공업소	3,873	어린이집 10m	5,168
청소년 활동시설	212	공연장	134	만화대여업소	153		
도서관	931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416	고속국도 휴게시설	1	합 계	271,885

○ 시·자치구 조례(실외 공공장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구 분	개소
공 원	1,944	거 리 (통학로, 하천변 포함)	702	주유소, 충전소	213
어린이집 주변	303	지하철 출입구 주변	1,538	전통시장	65
학교 주변 (유치원 포함)	1,603	광 장	18	마을마당 및 기타	234
버스정류소 주변 (중앙 가로·마을)	9,920	어린이놀이터 주변	194		
택시 승차대 주변	253	아동복지시설 주변	89	합 계	17,076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88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김경우, 경만선, 권영희,
김용석, 김제리, 서윤기,
신정호, 양민규, 이상훈,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채유미, 최 선,
황인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기존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는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에서 배제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초·중·고등학교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금연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4호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유아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p> <p>5. ~ 9.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u>학교 및 「유아교육법」에</u>--- ----- ----- ----- ----- -----.</p> <p>5.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문서번호

2021051800000020

미참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김경우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5.18

회신일 : 2021.05.24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참부 근거 규정
3. 미참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제1항제4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추가함으로써 학교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표지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표지 설치 방법(설치 위치, 설치 간격, 표지판 소재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본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 학교의 수는 ' 20년 10월 기준 총 1363개교(초등학교 606, 중학교 387, 고등학교 320, 기타 50)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